

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

2002. 9. 1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89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(2002. 9. 11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채진욱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아래의 구유재산은 90. 12. 26 마포구로 소유권이전, 97. 6. 20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재산이며, 매수신청인 소유 무허가건물 (노고산동 107-82)로 전필 주거용으로 점유·사용중인 토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점유·사용중인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.
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 (천원)	소유자	매각시기	매각사유	매각방법
	지목	소재지	면적 (㎡)					
1	대지	노고산동 117-24	90.7	124,168	마포구	2002. 9. 30 매각예정	동 재산은 매수신청 인의 소유 무허가 건 물로 점유·사용되는 주거용 토지로 보존 부적합 재산임	수의계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물은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(안)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,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점유·사용 중인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○ 매각하고자하는 동 재산은 마포구 노고산동 117-24에 위치한 대지로 면적은 90.7㎡(약 27.4평)이고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1억2,416만8천원으로 지상에는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고 현재 매수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음.

○ 매각추정가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한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에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200㎡이하)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유응봉 위원) : 지상 무허가건물의 건평은?
- 답변요지(채진욱 재무과장) : 대지면적 90.7㎡중 10여㎡를 제외한 면적이 건물면적이며, 80. 4. 30 이전 점유한 기존무허가 건물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:2002.8.

제 출 자: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아래의 구유재산은 90.12.26 마포구로 소유권이전, 97.6.20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재산이며, 매수신청인 소유 무허가건물 (노고산동 107-82)로 전필 주거용으로 점유·사용중인 토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점유·사용중인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.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경가액 (천원)	소유자	매각시기	매각사유	매각방법
	지목	소재지	면적 (㎡)					
1	대지	노고산동 117-24	90.7	124,168	마포구	2002.9.30 매각예정	동 재산은 매수신청인의 소유 무허가 건물로 점유· 사용되는 주거용토지로 보존 부적합 재산임	수의계약

3.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(2002. 3. 25 법률제6669호)
- 지방재정법 제77조 (2001. 1. 29 법률제6400호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(2001. 9. 15 대통령령제17363호)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제5항제1호
(2002. 5. 15 조례 제513호)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조례시행규칙 제29조 (2001. 3. 31 규칙 제354호)

구유재산관리계획

연도관리계획총괄표(6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상반기			하반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량	금 액	
취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득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계	토지 건물 기타				1	1	124,168	1	1	124,168	
	4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			1	1	124,168	1	1	124,168	
분	5. 양 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취 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매각대상 재산목록(6-4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	매각 대상 수량	과 포 또 는 평가액	매각 시기	매각사유	매 수 희망자 주소·성 명	비 고
	구분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량						
1	매각	대지	노고산동 117-24	1	1	124,168	2002. 3/4 분기	동 재산은 매수신청인 의 소유 무허가 건물로 점유·사용되는 주거 용 토지로 보존부적합 재산임	노고산동 107-82 김 갑 곤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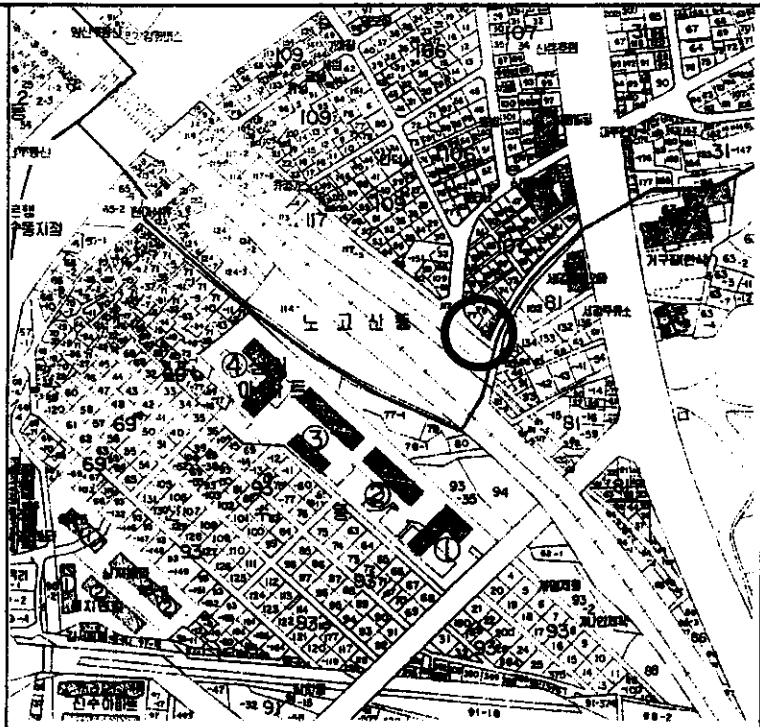
구유잡종재산매각대상위치도및현황도

위 치 도

□ 대상토지

○ 노고산동 117-24
대지, 90.7㎡

■ 폐수신청지



현 황 도

□ 대상토지

■ 폐수신청지

